

제 9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다. 제9.7조 및 제9.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모든 투자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해 어느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비정부 기관¹⁾이 수용(收用)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승인하거나, 쿼터나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을 부과하는 권한과 같이, 그 당사국에 의해 위임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비정부 기관에도 적용된다.

제 9.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의 목적상, “비정부 기관”이라는 용어는 공기업을 포함한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해야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해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범위에서, 그러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조치가 제12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3 조 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9.4 조 최혜국대우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 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9.5 조 대우의 최소기준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³⁾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의 창설하지 않는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상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4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3) 국제관습법은 법적 의무감에서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서 유래한다. 제9.5조에 대해,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칭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 9.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느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9.7 조 이행요건

1. 어느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또는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⁴⁾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4)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3항에 언급된 이의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기술⁵⁾,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3조와 제9.4조가 그 조치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해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
-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

5)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훈련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훈련은 자국 영역에 있는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4. 가.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해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리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2) 경쟁법 위반이라고 주장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하기 위해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해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⁶⁾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 차별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제1항나호, 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또는
-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6) 양 당사국은 특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조치

5. 제1항 및 제3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가.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항나호, 다호, 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제3항가호 및 나호의 규정은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구성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 그러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9.8 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준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은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에 기재된 자국 유보목록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제9.3조 및 제9.4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9.3조, 제9.4 및 제9.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6.20조(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조달, 또는
 -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9.9 조 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보건, 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장려를 회피하기 위해 협의한다.

제 9.10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비밀 영업정보를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9.11 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해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해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은 제9.8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와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12 조 수용⁷⁾

1. 어느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지 아니한다.
 - 가. 공공 목적⁸⁾을 위할 것
 -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 라. 적법절차와 제9.5조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 가. 자체 없이 지불된다.
 -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한다.

7) 제9.12조는 부속서 9나에 따라 해석된다.

8) “공공 목적”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에 따라 해석되는 조약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필요”와 같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과의 어떠한 불합치도 발생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
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
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용하는 당사
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을 통해, 자신의 사례 및 자신의 투자
에 대한 가치평가를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할 권리를
갖는다.

6. 이 조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7장(지적재산권)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
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현물수익, 그리고 투자에서 비롯되는 그 밖의 금액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11조 및 제9.12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제2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어느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투자에서 파생하거나 그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이윤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자국 투자자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송금하지 못한 자국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

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서 9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한다.

5. 제4항은 당사국이 제3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이 협정에서 달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물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14 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지 및 협의를 조건으로, 그리고 제21.2조(통지 및 정보 제공)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기업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러한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 9.15 조 대위변제

1. 당사국이나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대위변제 또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의 이전을 인정한다. 대위변제되거나 이전된 권리 또는 청구는 그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불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해결

제 9.16 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이 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관한 어느 한 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분쟁에 적용된다.
2. 분쟁 당사자들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해야 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협의 및 협상 요청일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 가. 분쟁 당사국과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 나.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 규칙

-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 라.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4. 일단,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체계에 분쟁을 회부하였으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고 배타적이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에 따라 분쟁을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동의한다.¹⁰⁾

가. 분쟁 투자자가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할 것, 그리고

나. 분쟁 투자자는 그러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한다는 의사를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¹¹⁾ 그 서면통지는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 1) 분쟁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한다.
- 2) 제3항의 중재판정부들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로 선택한다.
- 3) 제6항에 언급된 임시 가처분을 위한 절차는 제외하고, 분쟁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제3항에 언급된 그 밖의 어떠한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10) 양 당사국이 분쟁을 제3항라호에 규정된, 그 밖의 중재기관에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5항가호 및 나호에 수립된 조건이 적용된다.

11) 협의 및 협상을 위한 요청과 의사통지는 다음의 분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보내야 할 것이다.

페루에 대해서는: 국제경제, 경쟁민간투자국

경제 재정부

히론 람파 277, 5층

리마 1, 페루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제법무과

법무부

정부종합청사, 과천시

대한민국

- 4)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이 장에 따른 분쟁 당사국의 의무위반 주장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간단히 요약한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투자자는 분쟁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이나 분쟁 중인 사안의 실질적 쟁점의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임시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류되는 동안 분쟁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7.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8.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문제로서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또는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 또는 법률상 문제로서, 제기된 청구가 제9항에 따라 분쟁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분쟁 당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9. 중재판정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 분쟁 당사국에 의한 제1절에 따른 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그리고

나. 그러한 위반이 있었을 경우, 구제. 구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에 국한한다.

-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의 지불, 그리고
-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비용 또한 적용되는 중재규칙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

10. 제9항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11. 중재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비용은
 - 가. 중재 절차를 위한 절차 규칙에 따라, 분쟁이 회부된 중재기관에 의해 추정되거나,
 - 나. 적용 가능한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동의한 중재 절차를 위한 절차 규칙에 따라 추정된다.
12.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해 내려진 판정을 따르고 준수하는 한, 어느 당사국도 자국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했거나 회부한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분쟁 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교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9.17 조 양자간 투자조약의 기한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양자간 투자조약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권리 및 의무뿐 아니라 그 조약도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중단될 것임에 동의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양자간 투자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그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규칙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양자간 투자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양자간 투자조약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않는 한, 그 조약에 따른 중재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제 3 절

정의

제 9.1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간 투자조약이란 1993년 6월 3일에 서울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분쟁 투자자란 제2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 당사자들이란 분쟁 투자자와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당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 당사자란 분쟁 투자자 또는 분쟁 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그와 같이 지정된 통화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

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 및 대부¹²⁾¹³⁾¹⁴⁾
 -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 마.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 바. 지적재산권
- 사.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¹⁵⁾¹⁶⁾, 그리고
 -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및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¹⁷⁾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분이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12)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서 기인하며 지급기일이 임박한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3)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다른 쪽 당사국에 발행된 대부는 투자가 아니다.

14) 다호는 부속서 9라에 따라 해석된다.

15)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6)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17)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및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란 그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당사국의 투자자 외의 투자자로서, 투자하려고 하거나¹⁸⁾,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하거나¹⁹⁾,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란 1) 채무증서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그러한 채무증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통해, 또는 2) 채무증서의 총 미지급 채무원금의 75퍼센트 이상의 보유자들이 그러한 채무교환 또는 다른 절차에 동의한 포괄적 채무교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그러한 채무증서의 재조정 또는 만기 연장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1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할 때와 같이 그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만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로 양해된다.

19)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할 때와 같이 그 투자자가 앞에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만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로 양해된다.

부속서 9가
최혜국대우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대우는 국제조약 또는 무역협정에 규정된, 제2절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쟁해결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부속서 9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9.12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해 투자가 국유화 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9.12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다른 요소 중에서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해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부담하는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

거나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정책 조치(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²⁰⁾

20)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다호2목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9다
임시 세이프가드조치

1.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이동 관련 임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거시경제 관리, 특히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당사국은 연장 제안의 이행에 관해 다른 쪽 당사국과 사전 조율할 것이다.
-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 마. 모든 규제 자산²¹⁾에 관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 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 바.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 사. 몰수적이지 아니한다.
- 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되어야 한다.
- 자.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에 규정된 유보목록 그리고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부속서를

21)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우, 마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폐루 투자자에 의해 대한민국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조건으로, 제9.3조, 제10.2조(내국민대우) 및 12.2조(내국민대우), 그리고 제9.4조, 제10.3조(최혜국대우) 및 12.3조(최혜국대우)에 합치 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카.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²²⁾

3. 이 장,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2장(금융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폐루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및 송금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취득된 주식에서 나온 수익, 주식의 판매에서 나온 대금, 원금, 이자, 그리고 해외 지주회사 또는 그 자본투자의 지주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 의해 외국자본투자회사에게 제공된 대부에 대해 지불된 서비스료, 그리고 기술 도입을 위한 계약에 따라 지불된 보상을 지칭한다.

부속서 9라

공채

1.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매입이 상업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분쟁 투자자가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이 제9.12조의 목적상 보상되지 않은 수용이나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해 분쟁 투자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판정도 내려지지 아니한다.
2. 당사국에 의해 발행된 채무의 재조정이 제9.3조 또는 제9.4조를 위반한다는 청구를 제외하고, 그 재조정이 중재 제기 시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거나 그러한 제기 이후 교섭에 의한 재조정이 된 경우, 그 재조정이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는 어떠한 청구도 이 장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지속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을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발행한 채무의 재조정이 이 장(제9.3조 또는 제9.4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는 청구를 이 장에 따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를 발생시킨 사건의 발생일부터 27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